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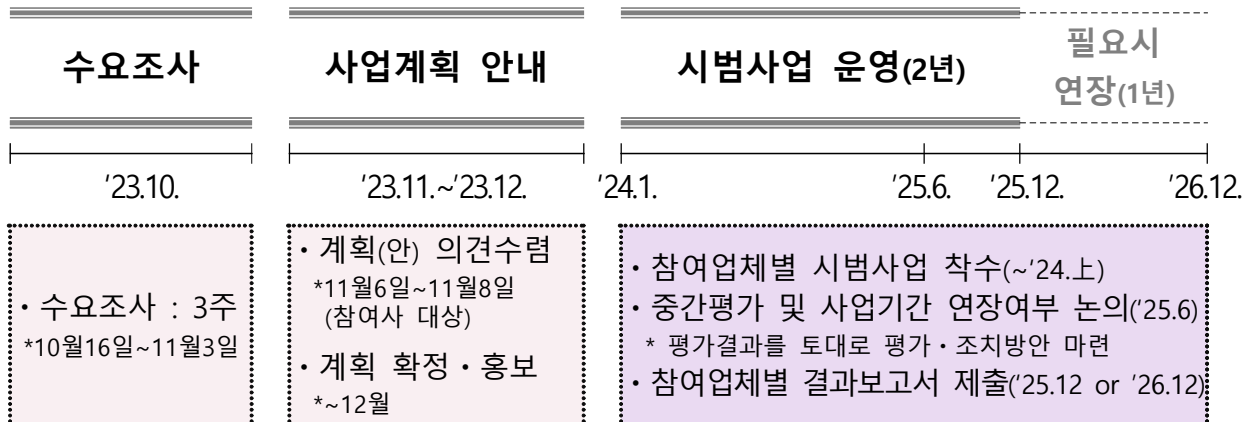
화장품 e-라벨 시범사업 참여업체 수요조사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**화장품 전자적 정보제공(e-라벨) 시범운영*** 참여업체 수요조사 안내문입니다.

* 식의약 규제혁신 2.0 과제(화장품 표시정보 디지털화로 다양한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)

- (사업목적) 화장품 분야의 전자적 정보제공 방식(e-라벨) 도입 타당성 검토
 - ※ 사업기간 중 소비자 제공 정보의 가독성 등 편의 향상, 포장재 폐기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화 수준 등 평가지표별 검증
- (신청업체) 화장품영업자로서 자체 e-라벨 플랫폼 구축·운영이 가능한 업체
- (대상품목) 국내에서 유통·판매하는 화장품(일부제외)*
 - * 화장품 유형 중 염모제, 탈염·탈색용 제품, 퍼머넌트 웨이브, 헤어 스트레이트너,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는 제외
- (기재정보) 「화장품법」 제10조 및 하위 규정에 따른 모든 기재·표시 정보
- (제공방법) 화장품의 용기·포장에 일부 정보를 표시하고 e-라벨*에는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전자적으로 제공(붙임 참고)
 - * QR코드 등으로, 표시 매체와 구동 방법(홈페이지 연계 등)은 업체가 자율 선택
- (사업기간) '24.1월 ~ '25.12월(2년 +a)

* '25년 하반기(2/3 시점) 중간평가 후 시범사업 연장(1년) 또는 사업 종료 등 결정



용기·포장 필수 기재 사항[※]

- ◆ **화장품의 명칭**
 - * 성분명을 명칭의 일부로 사용 시 성분명·함량 기재(방향용 제품 제외)
 - * 포장에 천연,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기재
- ◆ **영업자의 상호**
 - * (소비자가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)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
- ◆ **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**
- ◆ **제조번호**
- ◆ **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**
- ◆ **기능성화장품인 경우 “기능성화장품” 글자(또는 도안),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·효과, 용법·용량, “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”이라는 문구 (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 품목)**
- ◆ **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**
- ◆ **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**
- ◆ **QR 코드 및 “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-라벨 시범 사업 대상 제품입니다”라는 문구**
 - * e-라벨 확인 방법 기재(예: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)

e-라벨 제공 정보

- 화장품법령 상 제품에 기재하여야 하는 모든 정보
- * 용기·포장에 이미 기재·표시된 정보를 포함
 - * 『화장품법시행규칙』제19조 제4항제1호의 바코드 제외
 - * 단, 제조번호·사용기한은 e-라벨 자체 플랫폼 운영 여건을 고려해 제외 가능

※ ‘용기·포장 필수 기재 사항’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정보로, 제품의 포장을 훼손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함

- ▲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제외한 용기·포장 상 기재·표시사항의 글자크기는 10포인트 (한국산업규격 KS A 0201 기준) 이상이어야 함
- ▲ 유통 이후 최종 사용기한이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e-라벨 플랫폼 운영 필요 (사전 서비스 종료 시 표시의무 위반 제품 유통으로 간주, 기존 제품에 대한 회수·폐기 조치)
- ▲ 『화장품법』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1차 포장 기재사항과 판매자가 직접 표시하는 화장품의 가격 표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
- ▲ 『화장품법』 이외의 법률에서 제품의 용기·포장에 기재·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준수

※ 참여업체별로 자사 양식의 공문서에 아래 수요조사 서식에 작성한 내용을 첨부하여 2023년 11월 3일까지 (사)대한화장품협회로 제출

* 수요조사 취합 후 이번 시범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 참여 대상 업체 확정

연번	업체명	영업범위	등록(신고)번호	e-라벨 제공 플랫폼 구비여부	시범사업 참여시기
1		화장품제조업		예	'25.1월
2		화장품책임판매업		아니오	'25.4월
3		맞춤형화장품판매업			